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중기지방재정계획

-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홍천군의 지방재정계획입니다.

❖ 연도별 재정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	합 계	연평균 증가율
세 입	701,131	744,583	752,440	782,950	804,286	3,785,390	3.50
자 체 수 입	79,586	80,663	82,287	83,401	84,916	410,853	1.60
이 전 수 입	532,577	571,696	574,646	600,736	619,203	2,898,858	3.80
지 방 채	0	0	0	0	0	0	0.00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88,969	92,224	95,506	98,813	100,167	475,679	3.00
세 출	701,131	744,583	752,440	782,950	804,286	3,785,390	3.50
경 상 지 출	133,850	140,133	146,429	150,396	151,638	722,446	3.20
사 업 수 요	567,281	604,450	606,011	632,553	652,648	3,062,943	3.60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(공기업, 기타), 기금
- ▶ 연평균 증가율 = $[(\text{최종연도}/\text{기준년도})^{1/(\text{전체연도 수} - 1)} - 1] \times 100$

4-2. 성인지 예산현황

☐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☐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홍천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39	21,732
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	2	203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33	19,621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4	1,908

▶ 당초예산 기준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

(<https://www.hongcheon.gangwon.kr/www/contents.do?key=1781>)

●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,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·계획·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·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3.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

-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,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(주민주도형·주민참여형)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.

<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>

구분	주민제안사업		일반 참여예산사업
	주민주도형	주민참여형	
구분 기준	-예산편성 한도 설정 -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	-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-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	-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※단,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- 단위·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

- 다음은 홍천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예산규모 (당초예산)	주민제안사업		일반참여예산사업
	주민주도형	주민참여형	
594,638		722	

- ▶ 2019년 당초예산 기준

❖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총액			722	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보건소	홍천군 신혼부부 지원사업	9	계속사업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관광과	용소계곡 안내소 설치(안내간판) 및 버스운행 증설	44	신규사업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상하수도 사업소	상수도 설치	120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건설 방재과	화촌면 농어촌도로 204호선(노내골선) 개설	50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행정과	면 경계표지석 설치	12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농정과	내촌면 도관2리 사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	150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건설 방재과	하천제방 포장	40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건설 방재과	도로(진입로)포장	10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건설 방재과	동면 금계로 소하천배수로 설치	12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산림과	양덕원1리~군인아파트(월천리) 둘레길 개설	5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건설 방재과	팔봉2리 군도9호선(중실2교)선형개량	50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상하수도 사업소	북방면 하화계2리 오수관로 설치	170	"
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	관광과	장항리 둘레길 조성	50	"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

(<https://www.hongcheon.gangwon.kr/www/selectBbsNttList.do?bbsNo=21&key=96>)

4-4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홍천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8	78	155	200	508,919	461,727	47,192
기획예산담당관	1	2	4	9	12,524	9,711	2,813
행정국	1	37	70	94	210,309	198,311	11,997
경제국	1	31	65	63	216,126	195,396	20,730
도민체전추진단	1	1	2	1	3,730	2,000	1,730
의회사무과	1	1	3	2	723	701	22
보건소	1	2	3	12	9,380	8,893	487
농업기술센터	1	2	4	13	12,388	13,202	△814
상하수도사업소	1	2	4	6	43,741	33,514	10,227

- 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- 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
(<https://www.hongcheon.gangwon.kr/www/contents.do?key=1781>)

4-5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☐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16.70	72.65	23.97	37.07	44.35	79.69

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
4-6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항목별		기준액(총액)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201	60	△101
	부단체장		40	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35	235	-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128	47	4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	49	
	의원국외여비		32	
	의원역량개발비 (민간위탁)		4	
지방보조금		17,868	17,957	88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702	702	-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,175	1,175	-
공무원 일·숙직비		116	116	-

- ▶ 기관운영 업무추진비,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
 - ※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차액은 단체장, 부단체장외의 업무추진비(94,200천원)도 포함하여 계산함
- 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'을 참조하세요(<http://lofin.mois.go.kr>)

☞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: 총액한도(201,077천원)

- 군수 60,000천원, 부군수 40,000천원

- 과장(4급이상), 사업소장, 읍면장 등 94,200천원

- 편성 기준액 산출 산식 : 최근3년('18년~'16년)행정운영경비 평균액(57,450,627천원) \times 0.0035 = 201,077천원

☞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: 총액한도(234,529천원)

- 편성 기준액 산출 산식 : 기초기준액(234,322천원)+정책사업결산 연동액(2,071천원) \times 보정계수(0.1) = 234,529천원

☞ 지방의회 관련경비 : 총액한도(128,361천원)

- 편성 기준액 산출 산식 : {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(45,400천원) \times (1 + 0.297) + (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(41,520천원) \times (1 + 0.176) + (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(19,667천원) \times (1 + 0.05))} = 128,361천원

※ 2019년도에 한하여 1인당 0.8백만원 범위내에서 한도 조정 가능(1인당 0.5백만원 추가편성)

☞ 지방보조금이 기준액 보다 더 많이 편성된 사유는 보조금 총액한도 제외대상인 도민체전(시도단위 순회행사) 사업비(1,340백만원)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, 이를 제외하면 보조금 한도액보다 10억원 이상 적게 편성하였음

☞ 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 산출내역 : 702,140천원

- 이장 수당 : 200천원 \times 198명 \times 12회 = 475,200천원

- 이장 상여수당 : 200천원 \times 198명 \times 2회 = 79,200천원

- 이장회의 참석수당 : 20천원 \times 198명 \times 24회 = 95,040천원

- 반장 수당 : 50천원 \times 1,054명 \times 1회 = 52,700천원

☞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

- 기준액(1인 평균단가) 1,320천원(기준액 보다 적게 편성)
- 산출내역 : 1,175,250천원
 - 일반직 : 1,000천원×1,019명 = 1,019,000천원
 - 기간제 : 300천원×100명 = 30,000천원
 - 공무원 종합검진 : 250천원×505명 = 126,250천원

☞ 공무원 일·숙직비 산출내역 : 115,920천원

- 일직(단가 60,000원, 1일 4명 근무, 근무일수 118일) : 60천원×4명×118일 = 28,320천원
- 숙직(단가 60,000원, 1일 4명 근무, 근무일수 365일) : 60천원×4명×365일 = 87,600천원

4-7. 국외여비 편성현황

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출예산총계 (A)	국외여비 총액 (B=C+D)	국외업무여비 (C)	국제화여비 (D)	비율 (B/A)
560,322	563	23	540	0.10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(202-03 국외업무여비, 202-04 국제화여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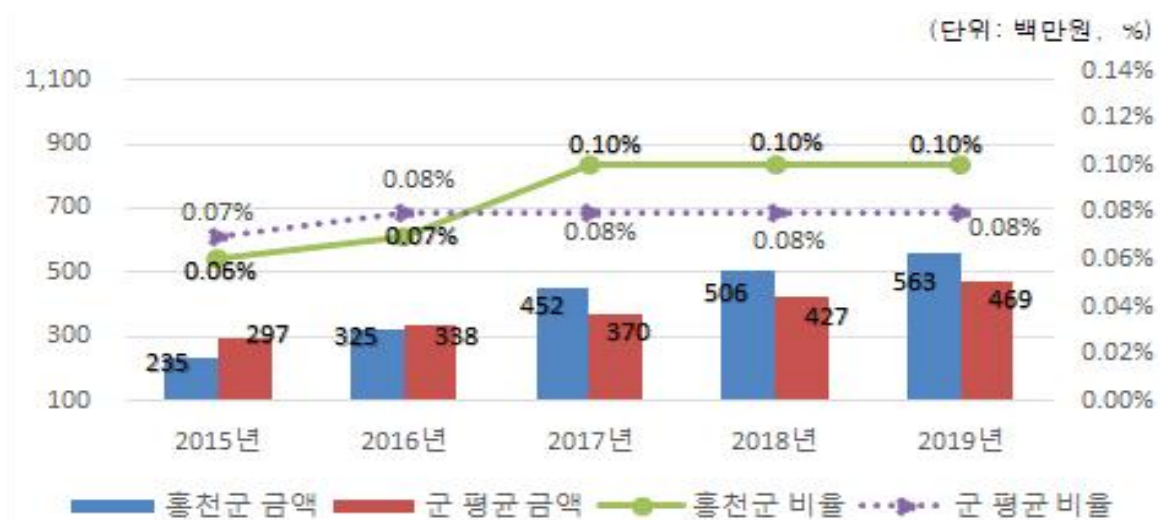
※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(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)

❖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세출예산총계 (A)	409,796	437,341	450,361	501,669	560,322
국외여비 총액 (B=C+D)	235	325	452	506	563
국외업무여비 (C)	33	33	23	23	23
국제화여비 (D)	202	292	429	483	540
비율	0.06	0.07	0.10	0.10	0.10

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

4-8. 행사·축제경비 편성현황

☐ 다음은 우리 홍천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,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출예산액 (A)	행사·축제경비 (B)	비율 (B/A)	비 고
495,135	5,761	1.16	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
- ▶ 대상과목 : 행사운영비 (201-03), 행사실비보상금 (301-09), 민간행사사업보조(307-04), 행사관련시설비 (401-04)

❖ 행사·축제경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세출예산액	365,812	386,100	392,880	446,784	495,135
행사·축제경비	6,741	3,364	3,448	3,721	5,761
비율	1.84	0.87	0.88	0.83	1.16

행사·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